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77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윤영석・이달희・박덕흠

김종양 · 김은혜 · 조경태

박대출 • 곽규택 • 구자근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및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판매대금의 유용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자기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임의로 대금 정산 주기를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임.

이에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 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사업자에게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 소한 소비자에도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부여하여 통신판매 중개거래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중개 의뢰 사업자 및 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는 대금 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되거나 소비자에게 반환될 것이라 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청구권이 있되,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이 철회되거나 재화 등을 반환한 소비자가 우선하여 청구권이 있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압류(가 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 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개 정 안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 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자는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는 대금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게 지급되거나 소비자에게 반 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청구권이 있되,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청약이 철회되거나 재화 등을

는 아니 된다.

-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판매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 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경우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저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u>경우</u>
⑦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
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
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
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
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
<u>다.</u>
∥32조(시정조치 등) ①
1

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u>제22조</u>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 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 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 ④ (생 략)

제20조의4,	제22조제1
<u>ŏ</u>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